

「WTO기본통신협상대책 공청회」 토론부문 “규제는 최소화, 경쟁은 공정하게”

WTO기본통신협상대책 공청회”주제발표에 이어 있는 토론시간에는 각계의 패널 토의자들이 “어떻게 하면”이란 물음에 답안을 냈다.

다음은 그 골자이다. 특히 질의 답변부분은 주제에 부합된 내용의 답변부분만 간추렸다. <편집자 주>

참 석 자

사회 : 배병휴 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김노철 한국통신 부사장, 성극제 경희대 교수, 신희택 변호사, 유승민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이윤호 LG경제연구원 대표, 이종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국장, 최병일 박사 통신개발연구원<가나다 순>

사회 : 이자리는 WTO기본통신서비스 협상전략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돌이켜 보면 UR협상 때는 국민적 이해와 특히 정부 부처간 이 견조율을 못해 비판을 받았다. 참석자 여러분의 발전적 의견을 마음껏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성극제 : 세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개방일정의 시간적인 타당성부분이다. 개방내용은 반대하다. 실집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에는 노력과 시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부문은 작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둘째, 양허표 작성과 협상이다. 양허표는 “법적으로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만큼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 WTO협상은 양허표를 네거티브로 작성하고 있다. 구체적 사항들의 기제가 요구된다. 최종안 제출을 늦추는한이 있어도 충실히 해야한다. 셋째, 선(先) 국내개방, 후(後)대외개방하는 문제이다. 먼저 국내개방으로 국내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고 하지만 통신사업은 2-3년사이 충분한 경쟁력이 가능하지 않다. 외국업체는 어차피 들어오게 되어 있다. 진출은 국내업체와 합작형태를 띄게될 것이다. 시간이 짧아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다면 동시개방은 통신 다국적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윤호 : 장비분야의 경우 현재 민간수요분야는 완전개방돼 있고, 정부조달과 관계있는 서비스사업자 장비분야도 94년 2월 EU와의 쌍무협상에 의해 개방돼 있다. 따라서 WTO기본통신협상과 관련 통신장비 산업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반면 서비스분야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잠식이라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서비스업자 대부분이 장비생산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자기장비 사용하려들것이다. 앞으로 2~3년간 5조원에 이르는 신규 수요의 70~80%가 외국사에 넘어갈 것이다.

반면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경쟁체제로 우리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기술유입이쉬워지며, 해외진출이 용이해 진다는 점이 있다. 그런데 해외 진출은 대상국이 기술과 자본이 없는 후진국이라는 고민이 있다.

정부가 선국내개방, 후대외개방하려는 정책은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왜 PCS신규사업자 선정을 늦추었는지. 장비업체 서비스분야 진출을 좀 더 일찍 허락 할 수 있지 않은가.

김노철 : 한국통신으로서는 시장진입제한폐지를 반대 안한다. 다만 기술이나 인력수급문제를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사업자 진출은 고려돼야 할 것이다. 한국통신입장으로는 '보편적서비스'가 있으므로 이런 의무에 충실하려면 외국인 지분참여부분은 제한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 통신서비스 진출은 제조기술과 서비스 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현재 서비스업자의 제조업 진출금지 조항이 있는 이상 형평성이 없다. 오히려 외국인 국내진출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공·전·공접속과 회선재판매를 실시하면 전용사업자는 시외·국제분야 등 고수익 분야만 고를 것이고, 보편서비스를 하고있는 한국통신으로서는 수입누수협상을 입을것이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성통신시장도 우리는 초기단계이므로 개방하면 사업자 난립과 아울러 외국인에 길만 열어주게되므로 기술확보때까지만 제한했으면 한다. 규제기관의 독립과 관련, 통신위원회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유승민 : 일반적 산업정책적 시각으로도 국내개방은 늦었다. 다음의 여섯가지를 짚어본다. 첫째, 기준이 무엇인가.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이용자입장을 생각한다면 경쟁을 터브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둘째, 개방하면 민간기업이 성장분야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발생가능한 부실기업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부 사업자가 부실화될 경우를 가상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망해가는 과정을 배워야 한다. 셋째, 통신정책은 재벌정책이 아닌가. 경쟁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자는 건데, 누군되고 누군안되고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현재 경쟁촉진정책대로라면 국내통신시장의 효율성이란 한국통신의 효율성과 직결되는데 어느정도 한국통신이 해낼 수 있겠는가. 그의 한방법이 민영화다. '원인규제'와 '폐해규제'중 원인규제도 해야한다. 다섯째,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인가하는 것은 약탈적 정책이다. 이에대한 현실적 기준이 무엇인가. 보편적 서비스분야가 기금으로 해소될 수 있는가. 여섯째, 통신위원회는 영국과 미국에서 산업별로 흔히 도입되고 있는 방식인데, 우리 체질에 맞을 것인가. 심중히 검토해야 한다.

신희택 : 그간 이용자 논리가 충분치 않았다. 제도개선 목표를 ① 이용자편익증대 ② 소비자로서 관련 산업육성 ③ 그럼으로서 사업자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두어야 한다. 고려되어야될 당사자는 1) 국내통신사업자, 신규 진입자, 관련자 2) 관련산업사업자(장비) 3) 통상압력 관련된 외국사업자 4) 규제기관(정부) 등으로 여겨져 왔고, 이용자와 사용자로서의 기업이 반영안됐다. 지금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연결고리가 통신서비스라고 볼 때 우선 고려되어야할 요소는 ① 국제기관의 규제 ② 통신사업자 이해보호 ③ 이용자 편의 등으로 이중 이용자편익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설정은 견제와 균형이 반영돼야 한다. 법률적으로 이에 도달해야 한다. 법은 예측가능성이 절차나 실제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다른 각도의 규제에 있어서는 '미니멈 오더'와 '옵티멈 오더'를 들수 있다. 제도를 만들데 확실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미니멈 오더가 마땅하다. 규제는 최소화 하고 집행은 철저히 해야 한다. 옵티멈 오더는 각 통신사업자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한다.

이종순 : WTO기본통신협상은 지난 1년반 동안 진행되어 왔다. 오는 12월부터 중요한 구체협상에 들어간다. 업계·연구계·학계와 더불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10개국에서 양허표를 제출했는데, EU측의 양허안이 당초 예상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이것이 협상의 기준이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기본통신망을 80년대 보급 완료했다. 이제 새서비스 수요충족과 발달하는 정보처리 기술의 확보가 문제이다. WTO관련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 지난 7월 통신사업자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 30여 업체가 새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간 경쟁도입과 시장진입제한철폐, 정부규제 최소화, 공정경쟁이 주요과제이다.

이자리 발표내용을 반영, 국익이 최대화되도록 협상안을 만들겠다.

사회 : 질문시간이니 질문해달라. <질문에 대한 답변>

○ 공·전·공 접속은 요금문제등 선결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고려한다.

○ 해외시장 진출은 선점이 필요하니, 기업의 해외개척노력이 필요하다.

○ 통신사업참여 대주주 지분 10%는 너무 낮은데, 96년 4월 WTO통신협상 시한 종료 후 제도개선때 반영하겠다.

○ 무선분야 기술발전을 위해 주파수 공개를 검토하겠다.

사회 : 오랜 시간 감사하다. 부디 통신시장개방이 우리의 통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